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6일, 이용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2. 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용우의원)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 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성폭력·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협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

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
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44조의
7제1항제2호 및 제70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없 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
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